

研究報告 94
1985. 8

農漁民後繼者事業資金의
適正支援額調查

姜 奉 淳(首席研究員)
金 容 澤(研究員)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면

머리말

農村에 定着할 意思와 能力이 있는 農漁村青少年들의 自立基盤을 確立시키기 위하여 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을 實시하여 온지도 벌써 5年째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巨額의 資金이 이 事業을 위해 支援되었고 많은 後繼者들이 이 事業에 의해 育成되었기 때문에 農漁民後繼者의 精銳化로 福祉農漁村建設을 위한 人的基盤을 確保하는데 이 事業이 크게 이바지해 온 것은 事實이지만, 이제는 이 事業의 外延的 擴大보다 內實을 기하기 위해 後繼者의 自立定着에 필요한 適正支援資金 規模와 償還能力을 고려한 適正償還期間을 檢討해볼 때가 되었다고 본다.

本研究는 事業의 種類, 支援받기 전의 所得水準, 後繼者의 所得目標 등에 따라 適正支援資金規模는 달라지며 아울러 貸出金利水準 및 償還可能財源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適正償還期間이 달라질 수 있다는 假定下에 여러가지 있음직한 시나리오를 作成하여 각각의 경우에 適正支援額과 適正償還期間을 推定해 보았다.

도조록 本研究의 結果가 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을 內實있게 推進하기 위한 參考資料로서 有用하게 活用되었으면 한다.

1985. 6.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金榮鎮

빈

면

目 次

머 리 말

第 1 章 序 論

1. 研究의 必要性	1
2. 研究의 目的	4
3. 農漁民後繼者 事業資金의 支援現況과 關聯研究結果	4
4. 研究의 範圍 및 方法	9

第 2 章 適正支援額의 推定

1. 基本假定	10
2. 算定方式	16
3. 推定結果	23

第 3 章 適正償還期間의 推定

1. 基本假定	26
2. 算定方式	28
3. 推定結果	29

第 4 章 要約 及 結論

表 目 次

第 1 章

表 1-1 農漁民後繼者 對象人員 및 資金支援實績	4
表 1-2 農漁民後繼者 育成基金造成 및 運營管理 現況과 計劃	5
表 1-3 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의 事業別 資金支援限度	6
表 1-4 農民後繼者 育成資金의 事業別 融資期間	7
表 1-5 事業別 適正支援資金額과 償還期間	8

第 2 章

表 2-1 農漁民後繼者 個人對象者의 資格要件	10
表 2-2 1985 農民後繼者 育成事業計劃	13
表 2-3 作目別 標準所得	15
表 2-4 耕種農業(水稻+田作物結合)의 單位當 所得	17
表 2-5 施設園藝의 單位當(畝 100畝+田 100畝)所得	18
表 2-6 事業別 適正支援額 推定	24

第 3 章

表 3-1 適正償還期間(貸出金利 5%일 境遇)	30
表 3-2 適正償還期間(貸出金利 3%일 境遇)	31
表 3-3 適正償還期間(貸出金利 7%일 境遇)	32

附表 1 作目別 標準所得	37
附表 2 元利金 償還基準表	54

第 1 章

序 論

1. 研究의 必要性

지난 20여년간 持續되어 왔던 工業中心의 高度經濟成長에 따른 產業化都市化過程은 國民經濟·社會與件에 크나큰 變化를 가져다 주었으며 또한 農村과 農業을 둘러싸고 있는 諸般與件에도 큰 變貌를 가져다 주었다.

經濟가 發展하면 할수록 農業에도 交換經濟가 普遍化되고 農業經營者的 生產目的도 단순히 自家食糧을 確保하기 위한 生產으로 부터 市場販賣를 為主로 하는 商業農的인 農業으로 變貌하는 轉換期的인 農業을 나타내며 이와 아울러 農業內部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變貌樣狀의 하나는 農業勞動力의 老齡化, 婦女化 現象이 현저히 增加하고 農家人口를 비롯한 農業就業人口가 急激히 減少하는 構造的 變化를 보인다는 事實이다. 더우기 經濟의 國際化趨勢에 따른 農產物輸入自由化的 壓力은 農業을 둘러싸고 있는 與件과 農業內部의 메카니즘을 급변시키고 있는 커다란 要因으로 등장하고 있다.

農業도 農業生產基盤의 擴充, 高米價政策을 비롯한 農產物價格支持政策新品種의 開發과 普及 등 일련의 의욕적인 農業政策에 힘입어 그 나름대로 成長과 發展을 거듭했으나 앞서 언급한 要因에 따라 農業·農村을 둘러싸고 있는 與件이 급변하고 이에 따라 農業과 農村에 중요한 問題를 露程케 하였다. 즉 食糧自給度의 低下, 過剩·過少生產의 反復現象, 農產物價格과 農家所得의 不安定性 深化, 農業勞動力의 量的·質的인 減少, 勞賃의 急上昇 등이 轉換期 農業·農村이 안고 있는 심각한 問題로서 認識되고 있다.

여기서 특히 農業勞動力의 절대적 減少, 老齡化·婦女化現象과 더불어 農村青少年의 영농기피현상은 農業發展의 큰 障碍要因으로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의 農業의 將來가 意慾的으로 新技術을 受容하여 合理的으로 영
농활동을 하고자 하는 젊은 營農從事者에 달려 있다고 할 때 높은 영농기
술을 갖추고 농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良質의 영농후계자를 確保·育成
하는 政策이 要望스럽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배경으로 政府는 1981년부터 農漁村에 定着하여
農業 또는 漁業을 營爲할 의사와 能力이 있는 農漁村 청소년을 발굴 집중
지원함으로써 農漁村의 발전을 主導할 핵심적인 營農指導者와 基幹營農人
을 養成하여 農漁村의 安定과 活力を 도모함과 동시에 農漁村社會의 安定
을 위한 人的基盤을 確保할 目的으로 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을 施行하고
있다.¹⁾

결국, 이는 合當한 資格과 能力を 갖춘 자를 선정하여 이들에게 보다 좋
은 條件의 資金을 融資하여 農業에 종사하여도 非農業部門의 종사자와 같
은 所得과 생활수준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함으로써 그들이 農
村에 定着하여 農業을 이끌어가는 先導農家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점진적
으로 이들의 數를 擴大하여 農業發展과 未來農業을 담당할 核心的인 要員
으로 養成하겠다는 意圖인 것이다.

그동안 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이 施行되고 나서 나름대로 많은 成果를
거두었으나 몇 가지 問題點들도 나타났는데 政策的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
는 것으로는 教育·訓練機關 및 金融支援機關의 多元化에 따른 指導體系의
非効率性, 單一事業設計로 인한 資源의 非効率的 活用 및 營農의 危險
性介在, 對象人員數의 不足, 特定部門에로의 支援資金의 偏重, 融資條件과
融資方法의 調整, 其他 教育·訓練問題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事例調查에
의하면 農漁民後繼者들이 겪고 있는 隘路事項으로서는 주로 農家經營 및
農家所得과 直結되고 있는 것으로 支援資金의 規模, 融資條件, 農產物價格의
不穩定性, 市場情報의 미흡, 營農技術의 不足 등을 열거할 수 있는데

1) 農水產部, 「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 1984. p.5.

이중에서 後繼者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資金規模와 融資條件인 것이다.²⁾ 특히 營農後繼者들의 營農定着을 위한 金融支援에 影響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投資所要額, 融資條件, 營農定着前 자기자금의 備蓄, 償還能力 등인데³⁾ 農漁民後繼者 育成資金과 같은 대규모정책 자금의 支援資金規模와 償還期間에 대한 研究·檢討는 農業資本의 制限現象과 관련하여 農政의 중요한 과제가 됨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資金의 適正規模와 適正償還期間에 대한 研究의 必要性을 보다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첫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政策的으로나 對象後繼者들에 있어서나 가장 문제시되고 隘路를 겪고 있는 實際的인 事項은 農產物價格과 農家所得의 不安定性과 連繫된 支援資金의 規模와 償還期間이며,

둘째, 農漁民後繼者 育成資金은 農業政策資金中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効率的인 資金支援方案에 관한 研究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研究가 時急하고,

세째, 現在 後繼者들에게 支援되고 있는 支援金額과 償還時期 및 利子率 등 融資條件에 대한 設定基準이 모호하고 後繼者들이 추가로 도입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事業에 따라 그리고 그들의 現在 資產狀態에 따라 事業別로 支援規模와 融資條件이 相異하게 나타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事業別로 거의 均一하게 적용되고 있어 事業別·適正資金規模와 適正償還期間의 推定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며,

네째, 初期에 선정된 後繼者들의 償還時期가 到來되어 있는 現在 事業別로 많은 後繼者들이 償還期間의 연장을 원하고 있어 이 사업의 지속적인 시행과 확장을 위해서는 農民後繼者 育成事業資金의 適正規模와 適正償還期間에 대한 研究가 절실히 要請되고 있는 것이다.

2) 朴振煥, “營農後繼者 育成資金의 用途에 관한 實態分析”, 農業經濟研究 第24輯, 1983.12. pp.11~27.

3) 農協中央會, “美國의 營農後繼者에 관한 融資支援現況”, 「農協調查月報」, 第25卷, 第5號, 1980.5. pp.117~130.

2. 研究의 目的

本研究의 目的은 農民後繼者가 營農活動에 從事하여 非農業部門의 從事者들과 같은 所得과 生活水準을 획득하여 이들이 自立經營農家로서 農村에 完全定着하는데 필요한 事業別 支援資金의 適正規模와 適正償還時期를 推定하여 現在 시행중인 農民後繼者 育成事業의 資金規模와 債還條件의 調整與否를 檢討하고 政策資金으로서의 農民後繼者 育成事業資金이 所期의 政策目標를 達成하기 어려울 때 이를 調整할 수 있는 政策基礎資料를 提供하는데 있다.

3. 農漁民後繼者 事業資金의 支援現況과 關聯研究結果

가. 農漁民後繼者 尋業資金의 支援現況

1) 對象人員 및 資金支援實績

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이 施行된 1981년부터 1984년까지 4년간 農業後繼者로 9,930명, 漁業後繼者로 1,014명이 선정되어 총선정된 後繼者의 수는 10,944명에 달하고 1984년까지 705億원의 支援資金을 融資하였다.

表 1-1 農漁民後繼者 對象人員 및 資金支援實績

年 度	對 象 人 員			一人當平均 支 援 資 金	支 援 資 金 總 計
	農 業	漁 業	計		
1981	1,796 名	149 名	1,945 名	百萬 원 4.4	86
1982	1,846	152	1,998	6.5	130
1983	1,808	193	2,200	6.9	139
1984	4,480	520	5,000	7.0	355
1985 (p)	6,313	687	7,000	7.0	490
計	16,243	1,701	18,143	6.6	1,200

1981년부터 1984년까지의 실적과 1985년의 계획을 나타낸 것이 〈表1-1〉이다. 또한 1人當平均支援資金은 1981년의 440만원에서 1984년에는 700만원으로 증额되었다. 1985년 施行計劃에 의하면 農漁民後繼者로 선정될 인원수는 7,000명이며 支援資金의 總額은 490億으로 計劃되어 있다.

2) 基金造成 및 運營管理 現況 및 計劃

農漁民後繼者 育成基金은 寄附 또는 贈與財產을 主要財源으로 하고 政府政府投資機關, 團體, 個人 및 他 基金으로부터의 出捐金, 基金運用收益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基金은 주로 國公債와 有價證券의 買入, 其他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基金增殖事業 등으로 運用되고 있으며 運用에 따른 收益金으로 後繼者 育成資金을 融資支援하고 있다. 이와같은 基金의 運營 및 管理業務는 農協中央會에 設置된 基金管理事務局이 담당하고 있다.⁴⁾

1983년말 現在까지 基金造成實績과 1987년까지 基金造成 및 運營管理計劃은 〈表1-2〉에 나타난 바와 같다. 1983년 현재까지 農漁民後繼者 育成基金의 總額은 1,477億원으로 寄附財產 26.5%, 政府出捐金 40.6% 畜振基金出捐金 40.6%, 財產處分益 3.4%, 運用收益金 22.7%로 構成

表 1-2 農漁民後繼者 育成基金造成 및 運營管理現況과 計劃

單位 : 億원

區 分	1983까지	1984	1985	1986	1987	累 計
寄 附 財 產	391	-	-	-	-	391
政 府 出 捐 金	100	-	-	-	-	100
畜 振 基 金 出 捐 金	600	200	350	320	200	1,670
財 產 處 分 益	51	-	-	-	-	31
運 用 收 益 金	335	145	121	111	74	786
合 計	1,477	345	471	431	274	2,998
累 計	1,477	1,822	2,293	2,721	2,998	-

4) 李重雄外, 「農民後繼者 育成事業을 위한 作目別 標準營農設計」,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研究報告 72, 1983, pp.19~20.

되어 있다. 이 基金은 1987년까지 2,998 億이 造成될 計劃인데 주로 畜振基金出捐金과 運用收益金에 의하여 造成될 豫定으로 있다.

3) 事業別 資金支援限度額

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의 事業別 資金支援限度額은 農業, 畜產, 果樹, 特作, 水產, 團體部門으로 區分하여 農地購入, 施設物設置費用 및 農機械購入

表 1-3 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의 事業別 資金支援限度, 1985

事 業 名		支 援 規 模			支 援 内 容
種別	細部事業名	單位	數 量	支 援 額	
農業	耕 種 農 業	坪	1,600	8 百萬원	農地購入, 施設物設置
	施 設 園 藝	"	300	7 "	家畜入殖, 農機械購入
	複 合 營 農	"		8 "	
畜 產	酪 農	頭	4	7 "	家畜入殖, 畜舍新設, 草地造成
	韓 牛	"	7	6 "	
	養 豚	"	50	6 "	
	其 他			6 "	
果 樹	サ パ	坪	3,000	6 "	農地購入, 苗木購入
	포 도	"	3,000	6 "	農機械購入
	其 他			6 "	
特 作	벼 석	坪	150	6 "	農地購入, 施設物設置
	人 莓	"	300	6 "	種子購入
	蠶 業	"	1,800	6 "	
	其 他			6 "	
水 產	海 藻 類 養 殖	噸	1	6 "	漁船建造 및 購入
	魚 貝 類 養 殖	"	1	8 "	施設物設置, 種子購入
	漁 船 漁 業			8 "	漁具購入, 施設改善
	蓄 養 漁 業			6 "	
	其 他			6 "	(其他는 漁具購入, 施設改善等)
團 體	協 同 營 農 協			10 "	協同課題 및 施設費

※ 複合營農은 食糧作物+經濟作物+畜產事業이 必히 連結되어야 하며 畜產事業에 投資되는 資金은 支援總額의 30% 未滿이어야 함.

費用 등 營農活動에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融資하고 있으며 事業別 資金支援規模와 支援內容을 分類 明示한 것이 <表 1-3>이다.

4) 融資條件

事業別 支援資金의 融資條件은 果樹部門이 4年据置 3年均分償還이고 果樹를 除外한 모든 부문은 3年据置 4年均分償還으로 되어 있으며 金利는 年 5%로 되어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낸 것이 <表 1-4>이다.

農民後繼者가 資金을 融資받은 후 債還期日 以前에 事業場을 離脫하거나 目的外에 融資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融資金을 回收토록 되어 있다. 또한 債還期間중에 천재지변 또는 기타 不可抗力의인 事由로 債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市道知事에게 債還期間에 대한 延長을 申請하도록 하며 市道知事은 農水產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債還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⁵⁾

나. 關聯研究結果

農民後繼者 育成事業에 관한 研究로서 指導 및 教育에 관한 것은 理論的인 것뿐만 아니라 事例의인 研究도 많이 있으나 育成事業의 支援資金規模와 債還期間의 適正與否에 관한 研究로서 代表의인 것은 朴振煥의 「營農後繼者 育成資金의 用途에 관한 實態分析」⁶⁾ 과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의 「農

表 1-4 農民後繼者 育成資金의 事業別 融資期間

事業名	据置期間	償還期間	計
耕種農業	3年	4年均分	7年
施設園藝	3年	4年均分	7年
畜産	3年	4年均分	7年
果樹	4年	3年均分	7年
特作	3年	4年均分	7年
協同營農	3年	4年均分	7年

5) 李重雄外, 前揭書, pp.17~18.

6) 朴振煥, 前揭書.

民後繼者 育成事業을 위한 作目別 標準營農設計⁷⁾를 들 수 있다.

朴振煥에 의하면 事業別 適正支援金額과 償還時期에 대해서 具體的인 論議는 없으나 事業別 育成事業資金의 集重傾向의 分析과 充足與否에 대한 研究를 한 結果 育成資金이 資本의 限界効率이 높은 부문에 集中되는 傾向이 있음을 밝히고 事例調查를 통하여 大多數의 後繼者들이 資金不足을 느끼고 있음을 究明하였다.

한편, 韓國農村經濟研究院에 의하면 各 事業別 適正支援資金額과 償還期間을 <表 1-5>에서와 같이 提示하고 있다. 事業別 標準營農設計에 의해 推定한 이 研究結果에 의하면 現行의 支援資金額과 償還時期가 調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研究는 1981년, 1982년 農民後繼者를 대상으로 1983년에 調查한 研究結果에 의한 것이므로 최근의 農畜產物의 價格變動과 生產資材費用의 變化 등을 제대로 反映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最近의 農業動向을 제대로 反映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最近資料에 立脚한 適正支援資金額과 償還時期의 推定에 대한 實證的研究가 要請된다고 하겠다.

表 1-5 事業別 適正支援資金額과 償還期間

事業別	適正資金支援額	償還期間	利子率 (%)
耕種農業	1,400 (만원)	13 (3)※(年)	5
施設園藝	600	7 (3)	5
韓牛	600	7 (3)	5
酪農	600	7 (3)	5
사과	600	10 (6)	5
단감	600	11 (7)	5
느타리	500	7 (3)	5

※ ()는 据置期間.

7) 李重雄外, 前掲書.

4. 研究의 範圍 및 方法

가. 研究範圍

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은 農民과 漁民을 대상으로 施行되고 있으나 事業에 選定된 人員數와 支援金額에 있어서 農民後繼者의 비중이 훨씬 높으므로 本研究에서는 漁民後繼者를 除外하고 農民後繼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農民後繼者들이 택하는 事業部門중에 複合營農과 協同營農은 事業設計內容이 무수히 많을 수 있어 적당한 標準營農設計를 적용시키기가 곤란하여 本 研究對象에서 除外시키고 耕種農業, 施設園藝, 畜產, 果樹特作 등을 研究對象으로 하였다. 아울러 事業別 標準營農設計는 後繼者農家마다 채택하는 作付體系나 營農類型이 상이하고 다양하여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의 研究報告書 「農民後繼者 育成事業을 위한 作目別 標準營農設計」에서 設定된 標準營農設計를 適用하고, 그동안 시행된 農民後繼者 育成事業實績과 1985년 農民後繼者 育成事業計劃에 나타난 事業別 選定人員數와 支援金額의 比重이 높은 部門을 研究對象으로 하였다.

나. 研究方法

本研究는 後繼者對象農家들의 實態를 파악하는 것에 研究의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標本調查를 實施하는 대신에 農水產部의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農產物生產費調查結果報告」, 農村振興廳의 「農畜產物 標準所得」 등의 公式統計資料를 사용하되 事業의 種類, 支援받기 전의 所得水準, 後繼者의 所得目標 등에 따라 適正支援額이 달라지며 上記 要因 이외에도 貸出金利水準 및 債還可能財源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適正債還期間이 달라질 수 있다는 假定下에 여러가지 있음직한 시나리오를 作成하여 각각의 경우에 適正支援額과 適正債還期間을 推定해 보려고 한다.

第 2 章

適正支援額의 推定

1. 基 本 假 定

가. 支援받기 전의 資產狀態 및 所得

農漁民後繼者로 選拔될 수 있는 資格은 個人對象者의 경우에 推薦權者에 따라 洞·邑·面長이 추천하는 경우, 農業系 大學長 및 專門大學長이 추천하는 경우, 順天·晋州農專 附設 營農技術訓練機關長이 추천하는 경우,

表 2-1 農漁民後繼者 個人對象者의 資格要件

推 薦 資 格	資 格 要 件	
	必 須 資 格	一 般 資 格
洞·邑·面長	兵役을 畢하였거나 免除받은 35 歲以下의 農漁村 青少年中 營農(漁)定着意慾이 強한 者 (男·女 區別 없음)	當該 洞·邑·面管內에서 營農(漁)에 從事하고 있는 者
農業系 大學長 및 專門大學長		當該 大學 및 專門大學 卒業者 또는 '85 卒業豫定者
順天·晋州 專門 附設 營農技術訓練機關長		當該 訓練機關에서 3個月以上 專門營農技術訓練을 履修한 者
農業系高等學校長		當該 農業系高等學校卒業者

그리고 農業系高等學校長이 추천하는 경우의 4 가지로 分類될 수 있는데 그 具體的인 資格要件은 <表 2-1>과 같다. 한편 團體對象者の 경우엔 兵役을 畢하였거나 免除받은 35 세이하의 農漁村青少年(男·女區別 없음) 5人이상으로 構成된 새마을青少年會, 協同營農體, 機械化營農團, 漁村青少年協同營漁團 등의 團體로서 營農(漁)定着意慾이 強하다고 인정되어 추천권자가 추천한 模範的인 團體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農漁民後繼者로 選拔될 수 있는 이와같은 資格要件을 감안할 때 앞으로 選拔될 後繼者의 選拔前 資產狀態는 무일푼에서부터 상당한 資產을 保有하고 있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多樣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支援받기 以前의 所得水準도 多樣하기 마련이다. 實際로 이미 後繼者로 選拔된 者들의 選拔前 資產狀態 및 所得이 널리 分布되어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¹⁾

이와 같은 事實로 미루어볼 때 앞으로 選拔될 後繼者의 支援받기 以前 資產狀態 및 所得水準을 어느 一定水準으로 假定하는 것은 오히려 事實을 歪曲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同種의 事業을 導入하려 하는 경우에도 支援받기 以前의 所得水準에 따라 支援額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本研究에서는 支援받기 以前의 所得水準이 ⑦ 1984年度 農家經濟調查結果에 나타난 平均值인 5,549 千원인 경우, ⑧ 平均值보다 약간 적은 5백만원인 경우 및 ⑨ 平均值보다 약간 많은 6백만원인 경우의 3 가지를 예로 들어 計算해 보고자 하며, 이들 所得은 支援金에 의해 追加로 導入되는 事業과 관계없이 같은 水準으로 벌어들일 수 있다고 가정한다.²⁾

나. 後繼者의 適正所得目標

農漁民後繼者의 育成施策은 營農(漁)에 定着하여 農漁村發展을 主導해

1) 農水產部, 「農漁民後繼者 및 事業計劃」, 1983~85.

李重雄外, 「農民後繼者 育成事業을 위한 作目別 標準營農設計」, 農經研 研究報告 72, 1983.

2) 이 假定은 現在 農家들이 資本을 除外한 다른 資源은 遊休狀態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약간 非現實的인 假定일 수도 있으나 새로이 導入되는 事業이 既存의 營農規模에 비해 큰 規模가 아니라면 無理한 假定은 아닐 것이다.

나갈 後繼者의 養成에 그 뜻이 있으므로 이들의 所得目標設定은 이들의 所得이 他部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所得과 均衡을 이루는 水準에서 決定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비슷한 概念으로 定立된 것이 自立經營農家の 所得基準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自立經營農家란 農業發展을 先導하는 農家로서 經營能力을 갖춘 經營主와 家族勞動力を 中心으로 農業生產을 主軸으로 都·農間所得均衡을 유지할 수 있는 農家로서 定義되고 있기 때문이다.³⁾ 農水產部는 이와 같이 定義되는 自立經營農家の 所得基準을 1985년까지는 6백만 원 이상으로 그리고 1986年以後는 7백만원 이상으로 推定하고 있다.⁴⁾

따라서 事業別 適正支援額 推定에서는 ⑦ 1986年 이후의 自立經營農家 所得基準인 7백만원, ⑧ 이보다 50만원이 많은 7백50만원, 그리고 ⑨ 8백만원의 3가지를 後繼者の 所得目標로 삼았을 경우를 例示해 보려고 한다.

다. 追加로 導入된 丘陵의 內容

耕種農業은 ⑦ 수도작만 導入하는 경우, ⑧ 수도+大麥(後作으로) 結合의 경우, ⑨ 수도+田作物 結合의 경우 등 3 가지의 代案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 첫번째의 것은 수도 單作이 고려되지만 나머지 두가지의 경우는 結合의 形態가 무수히 많을 수 있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農民後繼者 育成事業을 위한 作目別 標準營農設計」(李重雄外, 1983)와 같은 結合의 比率을 갖는 것으로 假定한다.

施設園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標準營農設計에 따라 結合을 시키되 事業의 規模만 增減시키는 것으로 假定하고자 한다.

畜產의 경우는 <表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支援人員이나 支援資金面에서 비중이 높은 韓牛와 酪農의 경우를 例示하며, 韓牛는 標準營農設計에 따라 肥育牛와 繁殖牛를 같은 比率로 入殖하는 것으로 假定한다.

果樹는 사과와 포도를, 그리고 特作은 느타리버섯의 경우를 예로 들어

3) 崔正燮外, 「自立經營農家育成에 관한 研究」, 農經研 研究報告 85, 1984.

4) 農水產部, 「自立經營農家의 所得增大」, 1984.

表 2-2 1985 農民後繼者 育成事業計劃

事 業 名	支 援 人 員		支 援 資 金			
	人員數(名)	比 率(%)	資金額(백만원)	比 率(%)		
耕 種 農 業	1,327	21.0	10,322.3	23.3		
施 設 園 藝	389	6.2	2,697.2	6.1		
複 合 營 農	2,037	32.3	15,375.3	34.8		
畜 產	牛 酪 農 養 豚 其 他	1,580 722 30 22	25.0 11.4 0.5 0.4	9,349.1 4,923.1 177.7 130.6	21.2 11.1 0.4 0.3	
	小 計	2,354	37.3	14,580.5	33.0	
果 樹	사 단 복 포 其 他	과 감 송 도 他	19 5 3 11 7	0.3 0.1 0.0 0.2 0.1	113.4 29.5 17.9 68.4 42.0	0.3 0.1 0.0 0.1 0.1
	小 計	45	0.7	271.2	0.6	
特 作	벼 人 담 蠶 其 他	섯 蓼 배 業 他	43 38 1 72 7	0.7 0.6 0.0 1.1 0.1	257.2 227.9 6.0 430.6 42.0	0.6 0.5 0.0 1.0 0.1
	小 計	161	2.5	964.2	2.2	
	合 計	6,313	100.0	44,210.7	100.0	

資料：農水產部，「農漁民後繼者 및 事業計劃」，1985.

推定하고자 하며 이들은 각각 單一作目이 入殖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作目別 標準所得

어떤 作目을 入殖하여 生產할 때 기대할 수 있는 平均所得을 그 作目的 標準所得이라고 定義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標準所得은 地域에 따라 다를 수 있고, 生產者的 能力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入殖

規模에 따라 差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支援額을 地域에 따라 差等을 둔다거나 個人的 經營能力에 따라 差別을 한다면 平衡의 原則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實際로 그 差異가 有意性을 가질만큼 큰 것 같지도 않다. 또한 入殖規模에 따른 차이점을 어차피 새로이 導入되는 事業의 規模가 그렇게 크지도 않기 때문에 規模의 經濟를 無視해도 좋을 정도라고 여겨지며 아울러 이를 반영시킬 마땅한 資料도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作目別 標準所得은 全國平均值 概念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米麥은 農水產部의 「農產物生產費調查結果報告」資料를 利用하고 그 以外의 農畜產物은 農村振興廳의 「農畜產物標準所得」資料를 주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 두가지 資料에서 빠져 있는 作目은 農村經濟研究院의 「農民後繼者 育成事業을 위한 作目別 標準營農設計」에서 짐계된 資料를 사용하려고 한다. 가능한 한 最近의 資料인 1984 年度의 資料에 基礎를 두겠지만, 粗收入의 計算에서 豐凶에 따라 產出量의 差異가 많이 나는 作目은 1982 ~ 84 年의 3개년 平均產出量資料를 사용하며, 過剩 또는 過少生產으로 인해 價格振幅이 심한 作目的 경우도 지난 3년간의 平均價格資料를 사용하고자 한다.

經營費의 算定에서도 종묘비는 지난 3년간의 平均值資料를 사용하며, 기타 계속 오름세의 추세에 있는 項目이나 큰 變動이 없는 項目은 最近의 資料를 사용하고자 한다.

소값은 지난 1982 년과 1983 년에 異常高價를 形成했던데 반해 最近에는 異常低價이므로 正常의 경우의 기대소득인 標準所得은 1984 年의 平均值資料를 쓰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假定아래 算出된 作目別 標準所得은 <表 2-3>과 같으며 이들 標準所得을 導出한 具體的인 項目은 [附表 1]에 나타나 있다.

수도의 標準所得은 단보당 25 만원 水準이고, 보리와 콩은 5 만원 남짓 하며, 新品種 옥수수는 약 13 만원 정도이다.

田作物 가운데 노지고추의 標準所得은 단보당 약 29 만원 수준이고, 참깨가 16 만원, 봄배추 20 만원, 그리고 가을배추가 33 만원 정도다.

表 2-3 作目別 標準所得

作 目	粗 收 入	經 營 費	所 得	단위 : 원
수 도(300평)	357,443	106,285	251,158	
보 리(")	102,268	47,911	54,357	
콩 (단작)(")	113,518	52,727	53,791	
옥수수(신품종)(")	206,901	79,370	127,531	
노지 고추(")	477,805	191,239	286,566	
참깨(단작)(")	248,229	84,970	163,259	
봄 배 추(")	349,030	151,555	197,475	
가을 배 추(")	445,431	144,395	331,036	
시설 오이(100평)	817,493	325,611	491,882	
시설 딸기(")	830,292	286,455	543,837	
시설 고추(")	972,283	318,501	653,782	
시설 상치(")	377,000	189,046	187,954	
肥育牛(1두/년간)	1,626,974	1,129,809	497,165	
繁殖牛(")	630,474	280,774	349,700	
酪農(")	2,282,452	1,138,201	1,144,251	
사과(300평)	810,990	344,258	466,732	
포도(")	861,481	264,226	597,255	
느타리(재배상 100평)	5,602,000	4,385,750	1,216,250	

施設菜蔬는 오이가 100평당 49만원, 딸기 54만원, 고추 65만원, 그리고 상치가 19만원 정도이며, 畜產은 肥育牛가 一頭當 年間 50만원, 繁殖牛가 40만원, 그리고 酪農이 114만원 정도의 所得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假定한다.

果樹의 標準所得은 사과가 단보당 47만원 정도이며, 포도는 60만원 水準이다. 特作의 하나인 느타리버섯의 標準所得은 100평당 61만원 정도이다.

마. 事業別 投資所要額

入殖되는 事業의 規模에 따라 單位當 平均 投資所得額은 달라지게 마련

이다. 왜냐하면 各事業의 限界 投資所要額이 減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本分析에서는 이를 반영시킬만한 마땅한 資料가 없어 各事業別로 必要로 하는 單位當 投資額은 一定하게 固定되어 있는 것으로 假定한다. 이것이 약간 非現實의 假定이기는 하나 導入되는 事業의 規模가 모두 小規模인 것을 감안한다면 無理한 假定은 아닐 것이다.

基礎資料는 農村經濟研究院의 「農民後繼者 育成事業을 위한 作目別 標準營農設計」에서 集計된 資料를 주로 이용하되 價格資料는 그간의 價格變動을 고려하여 最近資料로서 대체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2. 算 定 方 式

가. 基本類型

$$\text{所要資金額} = [(所得目標 - 支援前所得) / 事業別 單位當 所得] \times 事業別 單位當 投資所要額$$

나. 例示되는 시나리오

基本假定에서 언급했듯이 適正支援額의 推定을 위해 첫째, 支援받기 전의 所得水準을 (1) 1984 年度의 平均值인 5,549 千원, (2) 5 백만원, (3) 6 백만원의 3 가지 경우를 假定하였으며, 後繼者의 適正所得目標도 (1) 自立經營農家 所得基準 7 백만원, (2) 7 백 50 만원, (3) 8 백만원의 3 가지 경우를 假定하였으므로 各事業別로 9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며 그 9 가지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

시나리오	支援前所得	所得目標
I	5,549 千원	7,000 千원
II	5,000 "	7,000 "
III	6,000 "	7,000 "
IV	5,549 "	7,500 "

시나리오	支援前所得	所得目標
V	5,000 千원	7,500 千원
VI	6,000 "	7,500 "
VII	5,549 "	8,000 "
VIII	5,000 "	8,000 "
IX	6,000 "	8,000 "

다. 農業別 單位當 所得推計

1) 耕種農業

(1) 수작만導入하는 경우 :单一作目을導入하므로 수작의標準所得과一致하는段步當 251,158 원

(2) 수작+大麥(後作으로)의結合 : 畜利用率을 115%로 보고, 쌀 1 단보 生產에 大麥이 0.15 단보 結合되는事業의 예상소득은 $251,158 + 54,357 \times 0.15 = 259,311$ (원)이 됨.

表 2-4 耕種農業(水稻+田作物結合)의 單位當 所得

區 分		栽培面積(평)	粗收入(원)	經營費(원)	所 得(원)
畣 (300평)	쌀 보리	300 45	357,443 15,340	106,285 7,187	251,158 8,153
田 (198평)	콩	60	22,704	10,746	11,958
	옥수수	24	16,552	6,350	10,202
	고추	66	105,117	42,072	63,045
	참깨	24	19,858	6,797	13,061
	봄배추	24	27,922	12,124	15,798
	가을배추	39	57,906	14,871	43,035
합계		582	622,842	206,432	416,410

5) 李重雄外, 「農民後繼者 育成事業을 위한 作目別 標準營農設計」, 農經研 研究報告 72, 1983.

(3) 수도十田作物의 結合 : 이 경우의 標準營農設計에 의하면 畦利用率을 115% 그리고 田利用率을 120%로 가정하고 있으며, 畦과 田의 比率을 3:2로 設計하였다. 쌀생산 10 a를 基本單位로 할 경우, 보리가 쌀의 後作으로 45 평 정도 耕作되며, 총 198 평의 밭에는 총 60 평, 옥수수 24 평, 고추 66 평, 참깨 24 평, 봄배추 24 평 및 가을배추 39 평이 生產되는 標準營農設計를 따를 경우 本事業의 單位當 所得은 <表 2-4>에서 보듯이 416,410 원임.

2) 施設園藝

追加로 導入될 事業의 內容에서 설명했듯이 施設園藝는 標準營農設計에 따라 논과 밭을 같은 比率로 利用하되, <表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논에는 쌀생산의 後作으로 시설오이와 시설딸기를 2:3의 比率로 栽培하고, 밭에는 시설고추, 시설상치, 시설오이, 봄배추, 가을배추 등의 栽培로 田利用率이 220%가 되도록 營農設計를 하는 경우, 田畠 각각 100 평씩을 이용하는 單位當 所得은 各作目의 標準所得에 各作目의 栽培面積을 곱함으로써 얻어진 495 千원이 됨 (<表 2-5> 참조).

表 2-5 施設園藝의 單位當 (畠 100 평 + 田 100 평) 所得

區 分		栽培面積(평)	粗收入(원)	經營費(원)	所 得(원)
畠 (100 평)	시 설 오 이	40	108,999	43,415	65,584
	시 설 딸 기	60	166,059	57,291	108,768
	쌀	100	119,147	35,428	83,719
田 (100 평)	시 설 고 추	35	113,433	37,159	76,274
	시 설 상 치	35	43,984	22,056	21,928
	시 설 오 이	50	136,249	54,269	81,980
	봄 배 추	75	66,600	33,100	33,500
	가 을 배 추	25	33,350	10,100	23,250
합 계		420	668,674	257,390	495,003

3) 畜 產

(1) 韓牛 : 韓牛飼育의 標準營農設計에 의하면 번식우와 비육우를 동시에 飼育하고 있으며 그 頭數도 비슷하므로 基本單位를 [번식우 1頭+비육우 1頭]로 보고 있다. 따라서 韓牛飼育의 單位當 所得은 번식우의 標準所得 349,700 원과 비육우의 標準所得 497,165 원을 합한 846,865 원임.

(2) 酪農 : 젖소만 入殖되므로 이 事業의 單位當所得은 젖소의 頭當 年間 標準所得인 1,144,251 원으로 볼 수 있음.

4) 果 樹

分析對象인 사과와 포도는 單一作目이 入殖되므로 이들의 標準所得인 466,732 원과 597,255 원을 각事業의 單位當 所得으로 봄.

5) 特 作

느타리버섯의 單位當 (100 평) 所得은 標準所得인 608,125 원임.

6) 事業別 單位當 所得

事 業 別		單 位	單 位 當 所 得
耕 種 農 業	수 도	논 300 평	251,158 원
	수도+보리	논 300 평	259,311 원
	수도+밭작물	논 300 평 + 밭 198 평	416,410 원
施 設 園 藝		논 100 평 + 밭 100 평	495,003 원
畜 產	韓 牛	번식우 1 두 + 비육우 1 두	846,865 원
	酪 農	젖 소 1 두	1,144,251 원
果 樹	사 과	사과원 300 평	466,732 원
	포 도	포도원 300 평	597,255 원
特 作	느 타 리 버 섯	재배상 100 평	1,216,250 원

라. 事業別 單位當 投資所要額 推計

1) 耕種農業

(1) 수도작만 導入하는 경우 :

畜 購 入 費	$300 \text{ 평} \times 5,808 \text{ 원}/\text{평}$	=	1,742,400 원
諸 稅 金 및 手 數 料	$1,742,400 \text{ 원} \times 3\%$	=	52,272 원
運 营 費			106,285 원
合 計			1,900,957 원

(2) 수도+大麥의 結合 :

畜 購 入 費	$300 \text{ 평} \times 5,808 \text{ 원}/\text{평}$	=	1,742,400 원
諸 稅 金 및 手 數 料	$1,742,400 \text{ 원} \times 3\%$	=	52,272 원
運 营 費			113,472 원
合 計			1,908,144 원

(3) 수도+田作物의 結合 :

畜 購 入 費	$300 \text{ 평} \times 5,808 \text{ 원}/\text{평}$	=	1,742,400 원
田 購 入 費	$198 \text{ 평} \times 3,644 \text{ 원}/\text{평}$	=	721,512 원
諸 稅 金 및 手 數 料	$(1,742,400 + 721,512) \text{ 원} \times 3\%$	=	73,917 원
運 营 費			319,904 원
合 計			2,857,733 원

2) 施設園藝 :

畜 購 入 費	$100 \text{ 평} \times 5,808 \text{ 원}/\text{평}$	=	580,800 원
田 購 入 費	$100 \text{ 평} \times 3,644 \text{ 원}/\text{평}$	=	364,400 원
諸 稅 金 및 手 數 料	$(580,800 + 364,400) \text{ 원} \times 3\%$	=	28,356 원
비 닐하우스新築 (철재)			1,540,000 원
運 营 費			257,390 원
合 計			2,770,946 원

3) 畜 产

(1) 韩 牛

畜舍新築敷地購入	$25 \text{ 평} \times 5,560 \text{ 원}/\text{평}$	=	139,000 원
畜舍新築費	$6 \text{ 평} \times 70,000 \text{ 원}/\text{평}$	=	420,000 원
韓牛(350 kg) 購入費	$2 \text{ 頭} \times 1,231,135 \text{ 원}/\text{두}$	=	2,462,270 원
갓타(소형)	$1 \text{ 대} \times 250,000 \text{ 원}/\text{대}$	=	250,000 원
其 他 機 具			250,000 원
運 營 費			353,000 원
合 計			3,649,270 원

(2) 酪 農

畜舍新築敷地購入	$25 \text{ 평} \times 5,560 \text{ 원}/\text{평}$	=	139,000 원
畜舍新築費	$5 \text{ 평} \times 100,000 \text{ 원}/\text{평}$	=	500,000 원
젖소購入(초산우)	$1 \text{ 두} \times 2,701,800 \text{ 원}/\text{두}$	=	2,701,800 원
搾 乳 機	$1 \text{ 대} \times 583,000 \text{ 원}/\text{대}$	=	583,000 원
우유통 및 其 他			50,000 원
運 營 費			162,500 원
合 計			4,136,300 원

4) 果 樹

(1) 사 과

果樹園敷地購入	$300 \text{ 평} \times 6,139 \text{ 원}$	=	1,841,700 원
造成費(1~3年次)			508,000 원
諸稅金 및 手數料	$1,841,700 \text{ 원} \times 3\%$	=	55,251 원
運 營 費			51,500 원
合 計			2,456,451 원

(2) 흥 도

果樹園敷地購入	300평 × 6,139 원	=	1,841,700 원
造成費 (1~2年次)			338,667 원
諸稅金 및 手數料	1,841,700 원 × 3 %	=	55,251 원
運營費			51,500 원
合計			2,287,118 원

5) 特作(느타리버섯)

栽培舍敷地購入費	125평 × 5,553 원/평	=	694,125 원
栽培舍新築(철재)	100평 × 23,000 원/평	=	2,300,000 원
給水場新築(브록·콘크리트)	5평 × 30,000 원/평	=	150,000 원
諸稅金 및 手數料	694,125 원 × 3 %	=	20,824 원
運營費			1,001,667 원
合計			4,166,616 원

6) 事業別 單位當 投資所要額

事業別		單位	單位當投資所要額
耕種農業	수도	논 300평	1,900,957 원
	수도 + 보리	논 300평	1,908,144 원
	수도 + 밭작물	논 300평 + 밭 198평	2,857,733 원
施設園藝		논 100평 + 밭 100평	2,770,946 원
畜產	韓牛	번식우 1두 + 비육우 1두	3,649,270 원
	酪農	젖소 1두	4,136,300 원
果樹	사과	사과원 300평	2,456,451 원
	포도	포도원 300평	2,287,118 원
特作	느타리버섯	재배상 100평	4,166,616 원

3. 推定結果

앞에서 설명한 算定方式에 의해 推計된 適正支援額은 支援받기 前의 所得水準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後繼者의 所得目標를 어느 水準에 두느냐에 따라 큰 差異를 보이고 있다.

標準營農設計에 따라 各事業別 入殖이 이루어지는 경우, 適正支援額은 所得目標를 達成하기 위해 增大시켜야 하는 所得에 比例한다. 支援받기 前의 所得水準과 後繼者의 所得目標를 각각 3 가지씩 다른 水準을 假定할 경우의 9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推定한 適正支援額은 <表 2-6>에서 보는 바와 같다.

水稻作만 導入하는 耕種農業의 경우엔 支援前 所得이 6백만원이고 所得目標를 7백만원에 두고 있는 시나리오 Ⅲ의 경우를 除外하곤 現行支援額이 適正支援額에 未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支援前의 所得이 5백만원이고 所得目標를 8백만원에 둔 시나리오 Ⅷ의 경우엔 適正支援額이 무려 2천 3백만원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水稻에 大麥을 結合시키는 경우와 田作物을 結合시키는 경우에도 適正支援額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시나리오 Ⅲ의 경우를 제외하곤 現行支援額이 適正水準에 未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施設園藝 역시 시나리오 Ⅲ의 경우엔 現行支援額이 適正支援額을 약 140만원 정도 초과하고 있지만 나머지 8 가지 시나리오의 경우엔 모두 適正支援額에 未達되고 있다.

韓牛의 경우엔 現行支援額이 例示한 어떤 경우의 適正支援額보다도 낮음을 알 수 있고 특히 支援前 所得이 5백만원이고 所得目標를 8백만원으로 간주한 시나리오 Ⅷ의 경우엔 適正支援額이 1,46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酪農은 現行支援額이 7백만원이지만 시나리오 Ⅲ의 경우 適正支援額은 4백만원 남짓하며 그밖의 경우엔 現行支援額이 適正支援額에 未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의 경우도 시나리오 Ⅲ의 경우를 除外하곤 나머지 8 가지의 모든 경

表 2-6 農業別 適正支援額 推定

단위 : 千원

事業別		現行 支援額	시나리오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耕種農業	水稻	8,000	10,987.8	15,150.0	7,566.0	14,770.8	18,934.0	11,368.0	18,553.8	22,717.0	15,150.0
	水稻 + 大麥	8,000	10,684.8	14,729.8	7,364.9	14,367.2	18,412.2	11,047.3	18,049.7	22,094.6	14,729.8
	水稻 + 田作物	8,000	9,974.4	13,747.0	6,859.2	13,404.0	17,148.0	10,317.4	16,833.6	20,606.2	13,747.0
施設園藝		7,000	8,119.9	11,194.8	5,597.4	10,917.7	13,993.6	8,396.1	13,716.5	16,792.3	11,194.8
畜産	韓牛	6,000	7,298.0	10,947.0	7,298.0	10,947.0	10,947.0	7,298.0	10,947.0	14,596.0	10,947.0
	酪農	7,000	8,272.0	8,272.0	4,136.0	8,272.0	12,408.0	8,272.0	12,408.0	12,408.0	8,272.0
果樹	사과	6,000	7,638.2	10,511.7	5,255.8	10,266.1	13,139.6	7,883.8	12,894.0	15,767.5	10,511.7
	포도	6,000	5,557.4	7,661.5	3,842.2	7,478.5	9,582.5	5,740.4	9,399.6	11,503.6	7,661.5
特作	느타리버섯	6,000	4,958.7	6,833.9	3,416.9	6,667.2	8,584.0	5,125.4	8,417.3	10,292.5	6,833.9

시나리오 I : 支援前所得 5,549 千원 ; 所得目標 7,000 千원

시나리오 II : " 5,000 千원 ; " 7,000 千원

시나리오 III : " 6,000 千원 ; " 7,000 千원

시나리오 IV : " 5,549 千원 ; " 7,500 千원

시나리오 V : " 5,000 千원 ; " 7,500 千원

시나리오 VI : " 6,000 千원 ; " 7,500 千원

시나리오 VII : " 5,549 千원 ; " 8,000 千원

시나리오 VIII : " 5,000 千원 ; " 8,000 千원

시나리오 IX : " 6,000 千원 ; " 8,000 千원

우에 適正支援額이 現行支援額 6백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와 느타리버섯의 경우는 시나리오 Ⅲ의 경우는 물론이고 支援前 所得이 1984 年度 農家年平均所得인 5,549 千원이고 所得目標를 自立經營農家 所得基準인 7백만원에 둔 시나리오 Ⅰ의 경우나 支援前 所得이 6백만원이고 所得目標를 7백 50 만원에 둔 시나리오 Ⅵ의 경우에도 現行支援額은 適正支援額을 充足시키고 있다. 反面에 所得目標를 達成하기 위해 増大시켜야 할 所得이 2백만원 이상인 나머지 6가지 경우엔 現行支援額이 適正支援額에 未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第 3 章

適正償還期間의 推定

1. 基 本 假 定

가. 債還可能財源

債還할 수 있는 財源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適正償還期間은 달라진다. 우선 고려할 수 있는 財源은 後繼者 育成計劃에 의거 導入하는 事業으로부터 發生하는 所得이 될 수 있다. 이 所得은 支援金에 의해 導入된 事業所得이므로 이 所得으로 그 融資金을 債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은 이치에도 合當한 것으로 여겨진다.

融資金의 債還財源으로 볼 수 있는 다른 한가지는 後繼者로 選拔되기 전에 每年 發生해온 農家經濟剩餘이다. 後繼者로 選拔된 후 支援金에 의해 새로운 事業이 導入되더라도 選拔前의 所得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借入金을 債還할 때까지는 消費水準을 늘리지 않는다는前提下에 選拔前의 農家經濟剩餘는 그대로 지속될 뿐만 아니라 選拔된 후에는 새로이 導入되는 事業에서 발생하는 所得까지 合한 것이 그 農家の 經濟剩餘가 될 것이다.

따라서 ⑦後繼者 育成計劃에 의거 導入되는 事業으로부터 發生하는 平均豫想所得(간략하게 事業所得이라 칭함)과 ⑮選拔前의 經濟剩餘에 事業所得을 합한 後繼者農家の 經濟剩餘를 償還可能財源으로 간주하는 2 가지의 경우를 例示하고자 한다.

나. 利子率

償還可能財源을 가지고 借入金의 元金과 利子를 償還하는데 걸리는 期間은 利子率을 어떻게 策定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農漁民後繼者 育成資金의 貸出金利가 現行 年利 5%이지만 이 金利는 政策的으로 調整이 可能한 것이기 때문에 本分析에서는 ⑦3%, ⑮5% 및 ⑯7%의 3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다. 据置期間

대부분의 入殖作目들은 當該年度부터 正常의 生產活動에 들어가므로 据置期間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果樹의 경우엔 수확이 시작되기 전에 수년이 걸리고 수확이 시작되고 부터도 所得이 正常水準에 도달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요한다.

後繼者育成을 위한 融資金償還에 따른 現行 据置期間은 果樹가 4年이고 餘他部門은 3年으로 되어 있다. 果樹의 경우 첫 3年間은 收入이 없이支出만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据置期間을 2~3년 더 늘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그러나 果樹이외의 部門은 收入에 큰 차질이 없는 한 現行 3년이 타당한 것으로 간주되며, 据置期間동안에는 借入金의 利子만 支拂하고 나머지 經濟剩餘로는 後繼者로 選拔되기 전의 負債를 清算하는 것으로 假定한다.

라. 後繼者の 消費支出과 事業擴張

後繼者로 選拔된 후 所得의 增加에 따라 消費水準도 늘어나고 또한 事業도 擴張하고 싶은 投資意慾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適正償還期間을 推定하는 本分析에서는 借入金을 完全 償還할

때까지 消費도 現水準에서 유지시키고 事業擴張도 하지 않는 것으로 假定한다.

마. 借入金 償還方法

償還方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즉, 初期에는 적은 額數를 상환하다가 점차 累進의로 늘려 가는 方法도 있고, 元金은 均等償還하고 該當年度의 利子를 몇붙이는 점감적인 방법, 그리고 元金과 利子를 합해 每年同一한 額數만큼 償還하도록 하는 方法 등이 있다.

첫번째의 方法은 定着할 수 있는 충분한 餘裕를 준다는 의미에서 農民에게 有利한 償還方法일 수 있겠지만, 이미 適切한 据置期間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으며 또한 초기에 적립을 해두지 않을 경우 나중엔 每年 발생되는 所得만으로는 상환이 벅찰 가능성도 있다는 결함이 있다. 두 번째 方法은 사업초기에 많은 액수의 상환을 요하므로 부적절하다고 하겠다. 대신에 마지막의 每年同一한 額數만큼씩 償還하도록 하는 方法은 每年의 償還可能財源이 거의 비슷한 水準이라는前提가 內在해 있으므로 事業別 標準所得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가장 合當한 方法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본 적정 상환기간의 추정에서는 세번째 方法인 元金과 利子를 합해 每年同一한 額數만큼씩 償還하는 方法을 假定한다.

2. 算定方式

가. 基本模型

每年 償還可能한 財源을 a 라고 하고 融資金을 A_0 라 하면, 償還可能期間은 策定되는 利子率 p 에 따라 다음 式을 만족시키는 n 이 된다:

$$a = A_0 \frac{(1+p)^n p}{(1+p)^n - 1}$$

나. 月 (償還期間) 을 구하는 方法

윗 式에서 每年 債還可能한 財源 a 와 融資金 A_0 는 事業別로 이미 알 수 있는 숫자들이므로 a/A_0 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구해진 값을 [別表 2]를 이용하여 策定하는 利子率 行에서 찾아 그 값보다 작아지기 시작하는 첫번째의 n 값을 찾으면 그것이 適正償還期間이 된다.

예를 들어, a/A_0 의 값이 0.224 라고 하면 貸出金利가 3%일 경우엔 5년이 적정상환기간이고, 5%일 경우와 7%일 경우엔 적정상환기간이 모두 6년이 된다.

3. 推定結果

가. 貸出金利 5%일 時遇

現行 債還期間은 果樹의 경우가 3년이고 나머지는 모두 4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債還期間은 農民들의 債還能力에 根據를 두어 策定한 것이라기 보다는, 据置期間을 合하여 7년이내에 貸出金 모두를 환수하고 환수된 資金으로 다시 貸出함으로써 受惠者를 擴散시키겠다는 政策的 意志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貸出金利를 現行대로 5%로 가정할 경우, 後繼者育成計劃에 의거 導入되는 事業으로부터 發生하는 平均所得을 借入金 債還可能財源으로 본다면 耕種農業은 9 ~ 10 年이 適正償還期間이고, 施設園藝는 7年, 韓牛와 酪農은 5年, 사과는 7年, 포도는 5年 등으로 대부분 適正償還期間은 現行 債還期間보다 긴 것으로 推計되고 있고, 단지 느타리버섯은 4年으로 現行 債還期間과 一致한다(表 3-1 參照).

한편, 後繼者農家の 經濟剩餘를 借入金 債還可能財源으로 볼 경우에는 後繼者로 選拔되기 前의 經濟剩餘가 어느 程度이었느냐에 따라 또 借入金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適正償還期間은 달라지는데 이 경우는 選拔되기

表 3-1 適正償還期間(貸出金利 5% 일 境遇)

單位: 年

事業別	借還財源 시나리오 1)	新規事業所得 共 通	農 家 經 濟 剰 餘									現行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耕種農業	水稻	10	5	7	4	6	8	5	7	8	5	4
	水稻+大麥	10	5	7	4	6	8	4	6	8	5	4
	水稻+田作	9	5	7	3	5	7	4	6	7	5	4
施設園藝		7	4	5	3	4	6	3	5	6	4	4
畜產	韓牛	5	3	4	3	4	4	3	4	5	3	4
	酪農	5	3	4	2	3	4	3	3	4	3	4
果樹	사과	7	4	5	3	4	5	3	5	6	4	3
	포도	5	3	4	2	3	4	2	3	4	3	3
特作	느타리	4	3	3	2	3	4	2	3	4	3	4

1) 시나리오의 種類는 <表 2-6>의 註를 參照.

전에 經濟剩餘가 發生했던 農家이면 新規事業所得만으로 債還할 경우보다 適正償還期間이 짧아질 것이다.

適正支援額을 推定할 때에 例示했던 9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適正償還期間을 推定해 본 결과 表 3-1에서 보듯이 多樣하게 나타나고 있다.

適正償還期間이 가장 짧게 나타난 경우는 시나리오 III으로서 耕種農業이 3~4년, 施設園藝가 3년, 韓牛 3년, 酪農 2년, 사과 3년, 포도와 느타리버섯이 2년으로 나타난 것에 반해, 가장 긴 경우는 시나리오 VII로서 耕種農業이 7~8년, 施設園藝가 6년, 韩牛가 5년, 酪農이 4년, 사과가 6년, 포도와 느타리버섯은 4년으로 現行보다 같거나 혹은 더 길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貸出金利 3% 일 境遇

貸出金利를 現行보다 낮은 3%로 策定할 경우의 適正償還期間은 <表 3-2>에 나타나 있다.

貸出金利를 낮출 경우는 적정상환기간은 약간씩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新規事業所得을 借入金 債還可能財源으로 볼 경우엔 耕種農業은 8~9

表 3-2 適正償還期間(貸出金利 3% 일 境遇)

單位: 年

事業別 시나리오 1]	償還財源 共通	新規事業所得	農業經濟計劃									現行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耕種農業	水稻	9	5	7	4	6	7	4	6	8	5	4
	水稻+大麥	9	5	7	3	6	7	4	6	7	5	4
	水稻+田作	8	5	6	3	5	7	4	6	7	5	4
施設園藝		7	4	5	3	4	5	3	5	6	4	4
畜產	韓牛	5	3	4	3	3	4	3	4	4	3	4
	酪農	4	3	4	2	3	4	3	3	4	3	4
果樹	사과	6	4	5	3	4	5	3	4	5	4	3
	포도	5	3	4	2	3	4	2	3	4	3	3
特作	느타리	4	2	3	2	3	3	2	3	3	2	4

1] 시나리오의 種類는 〈表 2-6〉의 註를 參照.

年이 適正償還期間으로 나타났고, 施設園藝는 7年, 韓牛 5年, 酪農 4年, 사과 6年, 포도 5年 및 느타리버섯 4年으로 酪農과 느타리버섯을 除外하고는 現行償還期間이 適正償還期間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後繼者農家の 經濟剩餘를 債還可能財源으로 볼 경우에는 시나리오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적정상환기간이 가장 짧은 것은 시나리오 III으로서 이 경우엔 現行 債還期間으로도 充分한 것에 비해, 적정상환기간이 가장 길게 나타나는 시나리오 VII의 경우엔 耕種農家와 果樹農家에 상환기간을 연장해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경우에 耕種農家는 7~8年이 적절하며 果樹는 4~5年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 貸出金利 7% 일 境遇

貸出金利를 現行보다 약간 높은 7%로 올릴 경우의 適正償還期間은 〈表 3-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일반적으로 貸出金利를 올릴 경우는 適正償還期間이 延長되는 경향이 있다.

新規事業所得을 農家の 借入金 債還可能財源으로 볼 경우에는 適正償還

表 3-3 適正償還期間(貸出金利 7% 일 境遇)

單位: 年

事業別 시나리오 1)	償還財源 新規事業所得	農家經濟剩餘									現行	
		共通	I	II	III	IV	V	VI	VII	VIII		
耕種農業	水稻	11	6	8	4	6	9	5	7	9	6	4
	水稻+大麥	11	5	8	4	6	8	5	7	9	5	4
	水稻+田作	10	5	7	3	6	8	4	6	8	5	4
施設園藝		8	4	6	3	5	6	4	5	6	4	4
畜產	韓牛	6	3	5	3	4	5	3	4	5	4	4
	酪農	5	3	4	2	3	4	3	4	4	3	4
果樹	사과	7	4	5	3	4	6	3	5	6	4	3
	포도	5	3	4	2	3	4	3	3	4	3	3
特作	느타리	5	3	3	2	3	4	2	3	4	3	4

1) 시나리오의 種類는 <表2-6>의 註를 參照.

期間이 現行償還期間보다 모두 긴 것으로 나타났다. 즉, 耕種農業은 10 ~ 11年, 施設園藝가 8年, 畜產은 5 ~ 6年, 果樹가 5 ~ 7年, 그리고 느타리버섯은 5年이 각각의 適正償還期間으로 推定되었다.

農家經濟剩餘를 債還可能財源으로 간주할 경우에는 시나리오에 따라 큰 差異를 보여주고 있는 바, 가장 짧은 상환기간을 보여주는 시나리오 III의 경우엔 現行償還期間이면 충분하지만, 가장 긴 시나리오 VIII의 경우엔 耕種農業이 8 ~ 9年, 施設園藝 6年, 韓牛 5年, 酪農 4年, 사과 6年, 포도 4年, 느타리버섯 4年 등으로 酪農과 느타리버섯을 除外하곤 適正償還期間이 現行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第 4 章

要約 및 結論

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의 施行過程에서 問題點으로 提起되고 있는 것은 資金支援規模의 過少 및 償還期間의 適正與否, 生產物의 販路, 農產物價格의 不安定性, 市場情報의 未洽, 農業技術의 不足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資金支援規模와 償還期間의 適正與否는 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과 簡接적으로 관련된 農政의 주요 關心事이고, 특히 農漁民後繼者 育成資金은 農業政策資金으로서는 比重이 높은 편이며, 最近에는 初期에 後繼者로 選拔된 農家가 받았던 融資金의 償還時期가 到來함에 따라 償還期間의 延長要請이 쇄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적절한 研究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本研究는 農漁民後繼者가 基幹自立農으로 完全定着하는 데에 必要한 事業別 適正支援願과 適正償還期間을 여러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 推定함으로써 現在 施行중인 育成事業의 調整與否를 檢討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調整할 수 있는 基礎資料를 提供하고자 하였다.

研究의 範圍는 農民後繼者의 경우에 限定시켰고, 農民後繼者中에서도 複合營農과 協同營農은 事業의 內容이 無數히 많은 데다가 마땅한 標準營農設計가 없어 研究의 對象에서 除外시켰다. 따라서 耕種, 施設園藝, 畜產果樹, 特作을 研究對象으로 하였다.

耕種農業은 水稻만 입식하는 경우, 水稻+大麥의 結合, 및 水稻+田作의

結合 등 3가지 경우를 区分하였고, 施設園藝는 標準營農 設計에 따르는 한 가지 경우를 例示하였으며, 畜產, 果樹 및 特作은 後繼者 育成事業에서 比較的 比重이 큰 韓牛와 酪農, 사과와 포도, 그리고 느타리버섯을 각각 例로 들었다.

適正支援額은 支援받기 이전의 所得水準과 後繼者의 所得目標設定에 따라 총 9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시나리오를 作成하여 入殖하는 事業의 種類別로 推定해 보았다.

適正償還期間은 앞에서 구한 9가지 시나리오 각각에 대해, 貸出利子率를 現行대로 5%로 하는 경우, 이보다 낮은 3%로 하는 경우, 그리고 이보다 약간 높은 7%로 하는 경우에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例示하였고, 아울러 農家가 借入金을 債還할 수 있는 財源을 後繼者 育成計劃에 의거 導入되는 事業에서 發生하는 平均所得으로 보는 경우와 農家經濟剩餘로 보는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適正償還期間을 推定해 보았다.

推定結果는 適正支援額의 경우 入殖하는 事業의 種類에 따라 큰 差異를 보일 뿐만 아니라 後繼者의 所得目標를 達成하기 위해 增大시켜야 할 所得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耕種農業이 보다 많은 支援을 필요로 하며, 다음은 施設園藝 및 畜產의 順이고 果樹와 特作은 상대적으로 적은 支援으로도 所得目標를 達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後繼者의 所得目標를 낮게 잡을수록 또 後繼者의 支援前 所得水準이 높을수록 適正支援額水準은 낮게 나타나는데 增大시켜야 할 所得水準을 100 만원이하로 본다면 現行 支援額水準이 거의 適正支援額水準을 充足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150 만원 이상이 될 경우는 대부분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適正償還期間의 推定結果는 貸出金利가 낮을 수록 적정상환기간은 짧아지는 경향이 있고, 後繼者 育成計劃에 의거 導入되는 事業에서 發生하는 平均所得을 債還可能財源으로 보는 경우엔 現行 債還期間이 거의 모든 事業部門에서 適正償還期間에 未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反面에, 農家經濟剩餘를 債還可能財源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支援받기 이전의 所得水準에 따라 큰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 즉, 支援받기 이전의 所得水準이 6

백만원 이상이 되어 每年 農家經濟剩餘가 160 만원 이상이었던 農家들에게는 대체로 現行 償還期間이 거의 모든 事業部門에서 適正償還期間을 充足시키고 있으며, 1984년의 平均所得水準인 555 만원으로 經濟剩餘가 116 만원 정도 發生하던 農家에게는 事業의 種類에 따라 현행 상환기간이 적 정상환기간을 충족시키는 것도 있고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도 있다. 반면에 支援받기 이전의 所得水準이 5백만원 이하로서 農家經濟剩餘가 60만원 이하이었던 農家에게는 現行 償還期間內에 상환을 완료하기가 힘든 事業部門이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경우에도 貸出金利가 낮으면 기간 내의 償還이 可能한 事業部門이 늘어난다.

이와 같이, 事業의 種類에 따라, 選拔以前의 所得水準에 따라, 後繼者의 所得目標設定에 따라, 貸出金利에 따라 또 償還可能財源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適正支援額水準과 適正償還期間은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本分析에서는 있음직한 여러가지 경우에 대해 推定하여 보긴 하였지만 이들은 있을 수 있는 수많은 경우의 극히 一部에 지나지 않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例示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本分析에서의 推定過程을 參照한다면 조그마한 수정으로 큰 어려움 없이 곧 再推定이 可能하리라고 본다.

아울러 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의 外延的 擴散보다는 適正한 支援金을 策定하고 適切한 償還期間을 적용시킴으로써 이들이 基幹自立農으로 完全히 定着할 수 있도록 內實을 기하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後繼者育成基金의 造成이나 運營管理計劃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 農水產部, 「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 1984.
- _____, 「主要農政指標」, 1984 ~ 85.
- _____,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1983 ~ 84.
- _____, 「農漁民後繼者 및 事業計劃」, 1983 ~ 85.
- _____, 「自立經營農家와 所得增大」, 1984.
- 農村振興廳, 「農畜產物 標準所得」, 1982 ~ 84.
- 農協中央會, 「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의 成果와 課題」, 1984.
- _____, “美國의 營農後繼者에 관한 融資支援現況”, 「農協調查月報」, 第 25 卷 第 5 號, 1980.5. pp.117 ~ 130.
- _____, “營農構造變化와 農漁民後繼者養成”, 「農協調查月報」, 第 23 卷 第 1 號, 1978.1. pp.2 ~ 31.
- _____, “日本의 農業後繼者의 現況과 對策”, 「農協調查月報」, 第 24 卷 第 4 號, 1979.4. pp.77 ~ 86.
- 朴振煥, “營農後繼者 育成資金의 用途에 관한 實態分析”, 「農業經濟研究」, 第 24 輯, 韓國農業經濟學會, 1982.12.
- 李重雄外, 「農民後繼者 育成事業을 위한 作目別 標準營農設計」,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研究報告 72, 1983.12.
- 朱宗桓, “農漁民後繼者育成方案”, 思想과 政策 Vol 2. No.2, 1985.
- 崔正燮外, 「自立經營農家 育成에 관한 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研究報告 85, 1984.
- 韓國農業教育學會, 「農漁民後繼者 育成세미나보고서」, 1981.10.
- _____, 「農漁民後繼者 育成基金事業의 診斷과 改善方向」, 1983
- Brandes, W. and E. Woermann, 「Landwirtschaftliche Betriebslehre」, Bd. I, Paul Parey, 1982.

附表 1 作目別 標準所得

○ 수 도

기준 : 10a 당

費 目		數 量	單 價 (원)	金 額 (원)	備 考
粗 收 入	主產物價額 (정곡)	446 kg	736	328,256	'82-'84 평균수량 평균가격
	副產物價額 (조곡)	621	47	29,187	
	計			357,443	
經 營 費	中種苗費			3,237	
	無機質肥料費			11,072	
	有機質肥料費			4,258	
	農藥費			8,525	
	其他諸材料費			2,980	
	營農光熱費			1,509	
	水利費			5,844	
	大農具費			15,249	
	小農具費			297	
	營農施設費			1,118	
計				54,089	
費	雇傭勞力費				
	畜力費				
	計			106,285	
所 得				251,158	

○ 보리

基準 : 10 a

費　　目		數　量	單價(원)	金額(원)	備　考
粗	主產物價額(정곡)	227	430.5	97,724	'82-'84 평균수량 평균가격
收	副產物價額	355	12.8	4,544	
益	計			102,268	
經營費	種苗費			4,297	
	無機質肥料費			11,057	
	有機質肥料費			7,282	
	農樂費			1,168	
	光熱動力費			928	
	水利費			—	
	諸材料費			369	
	小農具費			176	
	大農具費			9,254	
	營農施設費			1,092	
	施設償却費			—	
	修理費			—	
	造成費			—	
	賃借料及其他料金			—	
	計			35,623	
所	雇傭勞動費				
	畜力費				
計				47,911	
所　　得				54,357	

○ 총(단작)

基準 : 10 a

費　　目		數　量	單價(원)	金額(원)	備　考
粗	主　產　物　價　額	141 kg	773.2	109,021	'82-'84 평균수량 평균가격
收	副　產　物　價　額			4,497	
益	計			113,518	
經營費	種　苗　費	6.4 kg	777.4	4,975	'82-'84 평균수량 평균가격
	無機質肥料費			9,031	
	有機質肥料費			8,372	
	農　藥　費			3,391	
	光　熱　動　力　費			1,634	
	水　利　費			21	
	諸　材　料　費			1,315	
	小　農　具　費			584	
	大　農　具　費			6,758	
	農　舍　償　却　費			—	
	施　設　償　却　費			—	
	修　理　費			1,928	
	造　成　費			—	
	賃借料 및 其他料金			3,380	
	計			42,909	
所　得	雇　傭　勞　力　費			9,048	
	畜　力　費			1,770	
計				53,727	
所　得				59,791	

◦ 옥수수(신품종)

基準 : 10 a

費　　目		數　量	單價(원)	金額(원)	備　考
粗	主　產　物　價　額	652 kg	252.5	164,630	'82-'84 평균수량 평균가격
收	副　產　物　價　額			42,271	
益	計			206,901	
經營費	種　苗　費	2.5 kg	1,300	3,250	'84 농가구입가격
	無機質肥料費			20,182	
	有機質肥料費			12,491	
	農　藥　費			5,050	
	光　熱　動　力　費			2,363	
	水　利　費			361	
	諸　材　料　費			4,165	
	大　農　具　費			500	
	小　農　具　費			7,379	
	農　舍　償　却　費			1,172	
費	施　設　償　却　費			—	
	修　理　費			1,854	
	造　成　費			—	
	賃借料 및 기타料金			3,448	
	計			62,214	
所	雇　傭　勞　力　費			15,755	
	畜　力　費			1,401	
計				79,370	
所　　得				127,531	

○ 노자고추

基準 : 10 a

費　　目		數　量	單價(원)	金額(원)	備　考
粗	主 產 物 價 額	149.3 kg	3,200.3	477,805	'82-'84 평균수량 평균가격
收	副 產 物 價 額			-	
益	計			477,805	
經營費	種　苗　費	1.9 dl	13,719.3	26,067	'82-'84 평균수량 평균가격
	無機質肥料費			26,851	
	有機質肥料費			19,759	
	農　藥　費			16,823	
	光　熱　動　力　費			8,088	
	水　利　費			734	
	諸　材　料　費			44,461	
	小　農　具　費			570	
	大　農　具　費			8,524	
	農　舍　償　却　費			3,681	
	施　設　償　却　費			-	
	修　理　費			1,928	
	造　成　費			-	
	賃借料 및 其他料金			3,293	
	計			160,778	
所　得	雇　傭　勞　力　費			29,576	
	畜　力　費			885	
計				191,239	
所　得				286,566	

○ 참조(단작)

基準 : 10 a

費　　目		數　量	單價(원)	金額(원)	備　考
粗	主　產　物　價　額	61.7 kg	3,988.4	246,084	'82-'84 평균수량 평균가격
收	副　產　物　價　額			2,145	
益	計			248,229	
經 營 中 間 財 費	種　苗　費	0.8 kg	4,195.0	3,356	'82-'84 평균수량 평균가격
	無機質肥料費			10,926	
	有機質肥料費			11,668	
	農　藥　費			9,085	
	光　熱　動　力　費			1,743	
	水　利　費			—	
	諸　材　料　費			23,744	
	小　農　具　費			512	
	大　農　具　費			8,077	
	農舍償却費			937	
	施設償却費			—	
	修理費			1,584	
費	造　成　費			—	
	賃借料及其他對金			1,535	
	計			73,167	
所	雇傭勞力費			11,065	
	畜　力　費			738	
計				84,970	
所　　得				163,259	

○ 봄배종

基準 : 10 a

費　　目		數　量	單價(원)	金額(원)	備　考
粗 收	主　產　物　價　額	3,674 kg	95	349,030	'82-'84 평균수량 평균가격
	副　產　物　價　額			-	
	計			349,030	
經 營 費	種　苗　費	1.0 dl	7,682.7	7,683	'82-'84 평균수량 평균가격
	無機質肥料費			26,065	
	有機質肥料費			20,227	
	農　業　費			7,403	
	光　熱　動　力　費			3,522	
	水　利　費			699	
	諸　材　料　費			39,213	
	小　農　具　費			540	
	大　農　具　費			9,698	
	農　舍　償　却　費			3,795	
	施　設　償　却　費			-	
	修　理　費			1,810	
	造　成　費			--	
	賃借料 및 其他料金			3,041	
	計			123,665	
費	雇　傭　勞　力　費			27,374	
	畜　力　費			516	
計				151,555	
所　　得				197,475	

○ 가을배종

基準 : 10 a

費　　目		數　量	單價(원)	金額(원)	備　考
粗	主　產　物　價　額	8,128.3kg	54.8	445,431	'82-'84 평균수량 평균가격
收	副　產　物　價　額			-	
益	計			445,431	
經 營 費	種　苗　費	1.1 dl	7,682.7	8,451	'82-'84 평균수량 평균가격
	無機質肥料費			27,784	
	有機質肥料費			20,959	
	農　藥　費			9,236	
	光　熱　動　力　費			3,388	
	水　利　費			522	
	諸　材　料　費			5,199	
	小　農　具　費			485	
	大　農　具　費			8,413	
	農　舍　償　却　費			916	
費	施　設　償　却　費			-	
	修　理　費			1,885	
	造　成　費			-	
	賃借料 및 其他料金			3,481	
計				90,717	
所	雇　傭　勞　力　費			22,940	
	畜　力　費			738	
計				114,395	
所　　得				331,036	

○ 시설오이

基準 : 100평

費　　目		數　量	單價(원)	金額(원)	備　考
粗	主　產　物　價　額	1,790 kg	456.7	817,493	'82-'84 평균수량 평균가격
收	副　產　物　價　額			-	
益	計			817,493	
經營費	種　苗　費	1.5 dl	17,012	25,518	'82-'84 평균수량 평균가격
	無機質肥料費			20,797	
	有機質肥料費			19,585	
	農　藥　費			11,772	
	光　熱　動　力　費			20,607	
	水　利　費			1,531	
	諸　材　料　費			125,966	
	小　農　具　費			622	
	大　農　具　費			8,705	
	農　舍　償　却　費			2,048	
	施　設　償　却　費			34,127	
	修　理　費			9,618	
	造　成　費			-	
	賃借料 및 其他料金			7,620	
	計			288,516	
費	雇　傭　勞　力　費			36,948	
	畜　力　費			147	
	計			325,611	
所	得			491,882	

○ 시설물기

基準 : 100 평

費 目		數 量	單價(원)	金額(원)	備 考
粗 收	主 產 物 價 額	632.7 kg	1312.3	830,292	'82-'84 평균수량 평균가격
	副 產 物 價 額			-	
益	計			830,292	
經 營 費 用 財 費	種 苗 費	2852.6 본	9.9	28,241	'82-'84 평균수량 평균가격
	無 機 質 肥 料 費			13,459	
	有 機 質 肥 料 費			21,476	
	農 藥 費			8,438	
	光 熱 動 力 費			5,829	
	水 利 費			351	
	諸 材 料 費			101,732	
	小 農 具 費			548	
	大 農 具 費			7,976	
	農 舍 償 却 費			963	
	施 設 償 却 費			36,339	
	修 理 費			16,337	
	造 成 費			-	
賃借料 및 其他料金				5,210	
計				246,899	
雇 傭 勞 力 費				39,408	
畜 力 費				148	
計				286,455	
所 得				543,837	

○ 시설고추

單位 : 100 평

費 目		數 量	單 價(원)	金 額(원)	備 考
粗 收 益	主 產 物 價 額	1,225 kg	793.7	972,283	'82-'84 평균수량 평균가격
	副 產 物 價 額			-	
	計			972,283	
經 營 費	種 苗 費	0.7 dl	15,365.3	10,756	'82-'84 평균수량 평균가격
	無 機 質 肥 料 費			17,074	
	有 機 質 肥 料 費			18,145	
	農 樂 費			13,344	
	光 熱 動 力 費			16,848	
	水 利 費			3,256	
	諸 材 料 費			126,000	
	小 農 具 費			400	
	大 農 具 費			8,955	
	農 舍 償 却 費			1,244	
	施 設 償 却 費			33,616	
	修 理 費			13,499	
	造 成 費			-	
	賃借料 및 其他料金			7,553	
	計			270,690	
費	雇 傭 勞 力 費			47,443	
	畜 力 費			368	
	計			318,501	
所 得				653,782	

○ 시설상지

單位 : 100 원

費　　目		數　量	單價(원)	金額(원)	備　考
粗 收 益	主　產　物　價　額	961 kg	392.3	377,000	'82-'84 평균수량 평균가격
	副　產　物　價　額			-	
	計			377,000	
經 營 費	種　苗　費	0.7 dl	2,799	1,959	'82-'84 평균수량 평균가격
	無機質肥料費			14,176	
	有機質肥料費			12,687	
	農　樂　費			3,868	
	光　熱　動　力　費			6,950	
	水　利　費			615	
	諸　材　料　費			75,476	
	小　農　具　費			402	
	大　農　具　費			7,049	
	農　舍　償　却　費			492	
	施　設　償　却　費			30,632	
	修　理　費			6,763	
	造　成　費			-	
	賃借料 및 其他料金			5,536	
	計			166,605	
費	雇　傭　勞　力　費			21,998	
	畜　力　費			443	
計				189,046	
所　　得				187,954	

○ 비 육 우

기준: 1 두당/년간

費 目		數 量	單價(원)	金額(원)	備 考
粗	主 產 物 價 額	447.0 kg	3,522.0	1,574,334	년 2.6 회 347.0 kg增體
收	副 產 物 價 額			52,640	
益	計			1,626,974	
經 營 費	種畜費	1 두		711,492	
	濃厚飼料費			307,362	
	粗飼料費			48,848	
	診療衛生費			11,746	
	水道光熱費			6,854	
	諸材料費			14,511	
	小農具費			721	
	大農具償却費			7,410	
	農舍償却費			-	
	施設償却費			6,779	
費	修理費			2,407	
	종부豆			-	
賃借料及其他料金				1,842	
計				1,119,977	
雇 勞 力 費	雇傭勞力費			9,832	
	畜力費			-	
計				1,129,809	
所 得				497,165	

○ 번식우

기준: 1 두당/년간

費　　目		數　量	單價(원)	金額(원)	備　考
粗	主　產　物　價　額	1.0 두	568,547	568,547	'84 농가판매가격
收	副　產　物　價　額			61,927	
盈	計			630,474	
經 營 費	家畜償却費			28,750	
	濃厚飼料費			122,059	
	粗飼料費			64,927	
	診療衛生費			12,503	
	水道光熱費			5,059	
	諸材料費			11,853	
	小農具費			709	
	大農具償却費			8,173	
	農舍償却費			-	
	施設償却費			8,424	
	修理費			2,974	
	종　　부　　豆			8,141	
	賃借料 및其他料金			1,687	
	計			275,259	
	雇傭勞力費			5,515	
	畜力費			-	
	計			280,774	
所	得			349,700	

낙농

기준 : 1 두당 / 년간

費 目		數 量	單價(원)	金額(원)	備 考
粗 收 益	主產物價額	4536.4 kg	313.0	1,419,893	'84 농가판매가격
	副產物價額			863,559	
	計			2,282,452	
經 營 費	家畜償却費			330,075	
	濃厚銅料費			487,628	
	粗銅料費			112,073	
	診療衛生費			40,818	
	水道光熱費			13,435	
	諸材料費			16,539	
	小農具費			1,587	
	大農具償却費			23,543	
	農舍償却費			—	
	施設償却費			8,345	
	修理費			4,952	
	종부豆			11,348	
	賃借料及其他料金			4,652	
	計			1,054,995	
雇 傭 勞 力 費	雇傭勞力費			83,206	
	畜力費			—	
	計			1,138,201	
所 得				1,144,251	

사과

基準: 10a

費　　目		數　量	單　價(원)	金　額(원)	備　考
粗	主　產　物　價　額	2014.3 kg	399.4	804,511	'82-'84 평균수량, 평균가격
收	副　產　物　價　額	420.7	15.4	6,479	
益	計			810,990	
經	種　苗　費			—	
中	無機質肥料費			28,598	
間	有機質肥料費			30,021	
營	農　藥　費			65,588	
財	光　熱　動　力　費			9,696	
費	水　利　費			587	
	諸　材　料　費			59,117	
	小　農　具　費			946	
	大　農　具　費			10,883	
	農　舍　償　却　費			4,128	
	施　設　償　却　費			11,696	
	修　理　費			2,891	
	造　成　費			11,164	
	賃借料 및 其他料金			3,280	
	計			238,595	
雇	僱　傭　勞　力　費			105,220	
畜	畜　力　費			443	
	計			344,258	
所	得			466,732	

○ 土 產

基準 : 10 a

費 目		數 量	單 價 (원)	金 額 (원)	備 考
粗 收 益	主 產 物 價 額	1324.3 kg	646.7	856,425	'85-'84 평균수량 평균가격
	副 產 物 價 額			5,056	
	計			861,481	
經 營 財 費	種 苗 費			-	
	無 機 質 肥 料 費			27,700	
	有 機 質 肥 料 費			26,407	
	農 藥 費			34,285	
	光 熱 動 力 費			5,268	
	水 利 費			1,048	
	諸 材 料 費			47,859	
	小 農 具 費			891	
	大 農 具 費			9,138	
	農 舍 償 却 費			2,702	
	施 設 償 却 費			11,696	
	修 理 費			2,668	
	造 成 費			23,551	
	賃借料 및 其他料金			3,449	
費	計			196,751	
	雇 傭 勞 力 費			67,106	
畜	畜 力 費			-	
	計			264,226	
所 得				597,255	

附表 2 元利金 債還基準表

$n \setminus p$	2 %	3 %	3.5 %	4 %	4.5 %	5 %	5.5 %	6 %	7 %	8 %	$p \setminus n$
1	1.02	1.03	1.035	1.04	1.045	1.05	1.055	1.06	1.07	1.08	1
2	0.51505	0.52261	0.52640	0.53020	0.53400	0.53780	0.54162	0.54544	0.55309	0.56077	2
3	0.34675	0.35353	0.35693	0.36035	0.36377	0.36721	0.37065	0.37411	0.38105	0.38803	3
4	0.26262	0.26903	0.27225	0.27549	0.27874	0.28201	0.28529	0.28859	0.29523	0.30192	4
5	0.21216	0.21835	0.22148	0.22463	0.22779	0.23097	0.23418	0.23740	0.24389	0.25046	5
6	0.17853	0.18460	0.18767	0.19076	0.19388	0.19702	0.20018	0.20336	0.20980	0.21632	6
7	0.15451	0.16051	0.16354	0.16661	0.16970	0.17282	0.17496	0.17914	0.18555	0.19207	7
8	0.13651	0.14246	0.14548	0.148530	0.15161	0.15472	0.15786	0.16104	0.16747	0.17401	8
9	0.12252	0.12843	0.13145	0.13449	0.13757	0.14069	0.14384	0.14702	0.15349	0.16068	9
10	0.11133	0.11723	0.12024	0.12329	0.12638	0.12950	0.13267	0.13587	0.14238	0.14903	10
11	0.10218	0.10808	0.11109	0.11415	0.11725	0.12039	0.12357	0.12679	0.13337	0.14008	11
12	0.09456	0.10046	0.10348	0.10655	0.10967	0.11283	0.11603	0.11928	0.12590	0.13270	12
13	0.08812	0.09403	0.09706	0.10014	0.10328	0.10646	0.10968	0.11296	0.11965	0.12652	13
14	0.08260	0.08853	0.09157	0.09467	0.09782	0.10102	0.10428	0.10758	0.11434	0.12130	14
15	0.07783	0.08377	0.08683	0.08994	0.09311	0.09634	0.09963	0.10296	0.10979	0.11683	15
16	0.07365	0.07961	0.08268	0.08582	0.08902	0.09227	0.09558	0.09895	0.10586	0.11298	16
17	0.06997	0.07595	0.07904	0.08202	0.08542	0.08870	0.09204	0.09544	0.10243	0.10963	17
18	0.06670	0.07271	0.07582	0.07899	0.08224	0.08555	0.08892	0.09236	0.09941	0.10670	18
19	0.06378	0.06981	0.07294	0.07614	0.07941	0.08275	0.08615	0.08962	0.09675	0.10413	19
20	0.06116	0.06722	0.07036	0.073580	0.07688	0.08024	0.08368	0.08718	0.09439	0.10185	20
21	0.05878	0.06487	0.06804	0.07128	0.07460	0.07800	0.08146	0.08500	0.09229	0.09983	21
22	0.05663	0.06275	0.06593	0.06920	0.07255	0.07597	0.07947	0.08305	0.09041	0.09803	22
23	0.05467	0.06081	0.06402	0.06731	0.07068	0.07414	0.07767	0.08128	0.08871	0.09642	23
24	0.05287	0.05905	0.06227	0.06559	0.06899	0.07247	0.07604	0.07968	0.08719	0.09498	24
25	0.05122	0.05743	0.06067	0.06401	0.06744	0.07095	0.07455	0.07823	0.08581	0.09368	25
26	0.04970	0.05594	0.05920	0.062570	0.06602	0.06956	0.07319	0.07690	0.08456	0.09251	26
27	0.04829	0.05456	0.05785	0.061240	0.06472	0.06829	0.07195	0.07570	0.08343	0.09145	27
28	0.04699	0.05329	0.05660	0.060100	0.06352	0.067120	0.07081	0.07459	0.08239	0.09049	28
29	0.04578	0.05211	0.05545	0.05888	0.06241	0.06605	0.06977	0.07358	0.08145	0.08962	29
30	0.04465	0.05102	0.05437	0.057830	0.06139	0.06505	0.06881	0.07265	0.08059	0.08883	30
31	0.04360	0.05000	0.05337	0.05686	0.06044	0.06413	0.06792	0.07179	0.07980	0.08811	31
32	0.04261	0.04905	0.05244	0.05595	0.05956	0.06328	0.06710	0.07100	0.07907	0.08745	32
33	0.04169	0.04816	0.05157	0.05510	0.05874	0.06249	0.06633	0.07027	0.07841	0.08685	33
34	0.04082	0.04732	0.05076	0.05431	0.05798	0.06176	0.06563	0.06960	0.07780	0.08630	34
35	0.04000	0.04654	0.05000	0.053580	0.05727	0.06107	0.06497	0.06897	0.07723	0.08580	35
36	0.03923	0.04580	0.04928	0.052890	0.05661	0.06043	0.06437	0.06839	0.07672	0.08534	36
37	0.03851	0.04511	0.04861	0.05224	0.05598	0.05984	0.06380	0.06786	0.07624	0.08492	37
38	0.03782	0.04446	0.04798	0.051630	0.05540	0.05928	0.06327	0.06736	0.07580	0.08454	38
39	0.03817	0.04384	0.04739	0.05106	0.05486	0.05876	0.06278	0.06689	0.07539	0.08419	39
40	0.03656	0.04326	0.04683	0.050520	0.05434	0.05828	0.06232	0.06646	0.07501	0.08386	40
41	0.03597	0.04271	0.04630	0.05020	0.05386	0.05782	0.06189	0.06606	0.07466	0.08356	41
42	0.03542	0.04219	0.04580	0.04954	0.05341	0.05739	0.06149	0.06568	0.07434	0.08329	42
43	0.03489	0.04170	0.04533	0.04909	0.05298	0.05699	0.06111	0.06533	0.07404	0.08303	43
44	0.03439	0.04123	0.04488	0.04866	0.05258	0.05662	0.060076	0.06501	0.07376	0.08280	44
45	0.03391	0.04079	0.04445	0.04826	0.05220	0.05626	0.06043	0.06470	0.07350	0.08259	45
46	0.03345	0.04036	0.04405	0.047880	0.05184	0.05593	0.06012	0.06441	0.07326	0.08239	46
47	0.03302	0.03996	0.04367	0.04752	0.05151	0.05561	0.05983	0.06415	0.07304	0.08221	47
48	0.03260	0.03958	0.04331	0.047180	0.05119	0.05532	0.05956	0.06390	0.07283	0.08204	48
49	0.03220	0.03921	0.04296	0.04686	0.05089	0.05504	0.05930	0.06366	0.07264	0.08189	49
50	0.03182	0.03887	0.04263	0.04655	0.05060	0.05478	0.05906	0.06344	0.07246	0.08174	50

資料 : Brandes, W. and E.Woermann, [Landwirtschaftliche Betriebslehre] Bd I, Paul Parey, 1982. p.97.

研究報告 94

農漁民後繼者 事業資金의 適正支援額 調查

1985년 8월

發行人 金 榮 鎮

發行處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3][1] 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동 4-102

登錄 1979年 5月 25日 第 5-10號

電話 962-7311

印 刷 新新文化印刷株式會社
